

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법」 개정(법률 제17769호, 2020.12.29)으로 주민세 용어와 과세 체계 및 세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(안 제6조~제8조)

(개정 전)		(개정 후)
균등분(개인)	⇒	개인분
균등분(개인사업자)	⇒	사업소분
균등분(법인)		
재산분		
종업원분	⇒	종업원분

나.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현행화(안 제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절(제6조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절 개인분

제6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,000원으로 한다.

제3장제2절의 제목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제7조 및 제8조 중 “재산분”을 각각 “사업소분”으로 하고, 제7조 중 “제1항의 표준세율”을 “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절 균등분</u>	<u>제1절 개인분</u>
<u>제6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</u> <u>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	<u>제6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</u> <u>분의 세율은 10,000원으로 한다.</u>
<u>1. 개인의 세율</u>	
<u>가.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</u> <u>율 : 10,000원</u>	
<u>나.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</u> <u>세율 : 법 제78조제1항제1</u> <u>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</u> <u>한다.</u>	
<u>2. 법인의 세율 : 법 제78조제1항</u> <u>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u>	
<u>제2절 재산분</u>	<u>제2절 사업소분</u>
<u>제7조(세율) 법 제81조제2항에 따</u> <u>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</u> <u>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u>	<u>제7조(세율) -----</u> <u>-- 사업소분----- 제1</u> <u>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</u> <u>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</u> <u>적에 대한 세율”-----.</u>
<u>제8조(신고의무) 재산분의 납세의</u> <u>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</u> <u>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, 지번,</u> <u>용도, 층수, 건축물의 연면적,</u> <u>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</u> <u>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	<u>제8조(신고의무) 사업소분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.</u>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세법」

제74조(정의)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개인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2. “사업소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3. “종업원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4. “사업소”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.
5. “사업주”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.
6. “사업소 연면적”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.
7. ~ 8. (생략)

제78조(세율)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.

제81조(세율)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기본세율

가.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: 5만원

나.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

- 1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: 5만원
- 2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: 10만원
- 3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: 20만원
- 4) 그 밖의 법인: 5만원

2. 연면적에 대한 세율: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. 다만, 폐수 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③ 삭제 <2020. 12. 29.>

소 관 부 서		세 정 과
입 안 자	과 장	한 승 우
	담 당	김 봉 한
	담 당 자	김 정 욱 (480-6852)